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4. 25 선고 2022나163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4. 25 선고 2022나1638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1 선고 2021가합1056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현

변론 종결 2024. 3. 21.

판결 선고 2024. 4. 2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1. 선고 2021가합10566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 1) 피고 주식회사 A와 E 사이에 2019. 12. 3.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A는 E에게 특허청 2019. 12. 3. 접수 F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B와 E 사이에 2020. 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374,828,44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2) 피고 B는 원고에게 374,828,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C, D와 E 사이에 2020.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C, D는 E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0. 2. 21. 접수 제172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련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제2행부터 제7쪽 도표까지를 삭제하고, 제7쪽 도표 아래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8쪽 2.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E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3, 1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AC 및 AD 주식회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 E의 적극재산은 합계 2,093,303,676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2,452,000,000원 상당으로 인정되므로, E은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제1심법원과 달라지거나 추가된 부분은 굵은 글꼴로 표시하였다).

1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315,000,000
2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2,588,000
3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3,998,000
4	김포시 M 공장용지 482㎡	315,228,000
5	김포시 M 공장용지 482㎡ 위 지상 건물	260,926,650
6	김포시 N 도로 804㎡ 중 837/4017지분	11,542,474
7	김포시 ○ 공장용지 106㎡	69,324,000
8	충남 예산군 P 전 8653㎡	481,106,800
9	충남 예산군 Q 목장용지 1168㎡ 중 165/14628 지분	242,328
10	충남 예산군 R 임야 511㎡ 중 72/1132 지분	598,000
11	충남 예산군 S 임야 163㎡ 중 121/14752 지분	24,656
12	충남 예산군 T 임야 692㎡ 중 121/14752 지분	104,512
13	충남 예산군 U 전 653㎡ 중 7311/12000 지분	7,320,256
14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특허권	364,900,000
	별지1 목록 제1 내지 5, 7항 기재 특허권1)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특허권과 함께 이 사건 각 이전등록의 대상이 된 특허권으로 이 사건 제1 양도계약 당시에는 E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제2, 3 증여계약 당시에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특허권이다.	미상
15	별지3 목록 기재 특허권 중 2분의 1 지분	200,400,000
합계	2,093,303,676	

1	기업은행	2,000,000
2	H	181,000,000
3	V	1,009,000,000
4	I	830,000,000
5	W	50,000,000
6	X	185,000,000
7	Y	24,000,000
8	신용보증재단	30,000,000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1,000,000
10	경기신용보증재단	30,000,000
합계	2,452,000,000	

2)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는 그 중 제6항의 특허권에 대하여만 감정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특허권에 대하여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정확한 시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위 각 특허권의 경우, 이 사건 제2, 3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피고 A에게 양도되어,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E의 적극재산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제1 양도계약 당시에는 E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E은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으로 별지1 목록 기재 제6항 기재 특허권과 함께 나머지 특허권을 모두 처분하였으며, 앞서 본 표에 따르면, 그와 같은 처분행위 당시 위 각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액 1,728,403,676원은 소극재산액 2,452,0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그 행위 당시 위 각 특허권의 가액을 합한 E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E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설령 적극재산이 소극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위 각 처분행위로 E은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별지1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중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특허권에 대한 가액은 이 사건 제2, 3 증여계약은 물론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

○ 제13쪽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4쪽 제15~16행의 "이 법원 감정인 Z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W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종오

판사장현석

판사이주일

별지

1)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특허권과 함께 이 사건 각 이전등록의 대상이 된 특허권으로 이 사건 제1 양도계약 당시는 E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제2, 3 증여계약 당시에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특허권이다.

2) 피고는 2023. 9. 22. 별지1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중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특허권에 대한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